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균의원 발의)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김상균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상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점용 대상시설물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익을 위한 시설물(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등), 시민 안전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에 교통초소, 방범초소, 생활안전용 CCTV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이나 기념비 등의 공공조형물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함이 인정된 분리수거 시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담은 사항으로,

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철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이계철 의원 외 5인
-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이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에 있어 제안된 해당 상정 건의 타당성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명확히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사업자등의 의견청취 등’ 을 규정함(안 제67조의2 신설)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신청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 가.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한 심의·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등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신청인 또는 관련 지식부족 등 사유로 의견 개진함에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사안별로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의견 청취가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다만, 전문가 등 신청자의 범위를 행정사법 제2조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인허가 대행자에 한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심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문가의 세부 범위 등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이 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덕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임채덕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임채덕 의원)

가. 제안이유

-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역량강화사업 등을 규정하여 시민친화적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식을 규정함(안 제5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 그리고 시민친화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많이 그리고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원활한 참여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하는 개정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단계에서의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용환 도로과장)

가. 제안이유

- 화성시 동서균형 발전 일환으로 기반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조성 필요지역에 사업비 적기 투입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 정함(안 제1조)
- 기반시설 기금 조성 규정 정함(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간 규정 정함(안 제5조)
- 기금의 용도 규정 정함(안 제6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화성시 동서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의 재원과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반시설 조성 필요지역에 사업비를 적기 투입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 및 부대비용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목적 외에 대규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의 보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될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 그리고,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 그리고 결산 사항을 심의하는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 집행부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이 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서봉기 도시디자인과장)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추가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관심의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궁평유원지 일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규정 신설
(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안 별표 신설)
-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수립한 화성시 경관계획에 따라 추가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궁평유원지 일대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과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궁평유원지 일대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않고, 건축물의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 라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을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라. 추후 궁평관광지 연결로 등이 조성됨으로써 도로변의 무분별한 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기에 궁평유원지 일대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 추가는 적절해 보이며,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어 신청인의 혼란을 줄이고 심의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 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서봉기 도시디자인과장)

가. 제안이유

-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연장 대상인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
- 「화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 위 탁 기 간 : 2022. 3월 ~ 2015. 02. 28.[3년]
-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 공 고 일 자 : 2022. 2월중(10일간)
- 위 탁 근 거 :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2) 「화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3)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위 탁 내 용

-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안전점검 실시
-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안전점검 실시
-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안전점검 실시
- 4)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점검 실시
- 5)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

○ 위탁대상 광고물

종 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제외 대상
벽면이용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돌출간판	·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면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 · 한 변 길이 10미터 이상인 것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 높이가 4미터 미만의 볼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
자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애드벌룬	· 높이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	
게시시설	· 위 항목의 모든 게시시설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동의안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운영관리 위탁 계약이 2023년 6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사업자인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와의 민간위탁 재

계약에 대하여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과 동일하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3년간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결되어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와의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 다만,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는 하지만, 동 조례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차례만으로 재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위탁계약 신청자 등은 없었는지 꼭 필요한 경우의 재계약이었는지 차후에는 면밀히 살펴어서 일부 업체만이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라. 또한, 재계약 시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강행 규정이기에 혹여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위탁 계약 기간이 도과하게 되어 사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에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이 외에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노남용 건축허가과장)

가.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영리목적에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비율을 신설(안 제4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제2항이 영리목적에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2020. 12. 8.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는 강행규정이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영리목적에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나,

다. 다만, 상위법인 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게끔 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서 우리사와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가중 비율을 비교하였을 시에도 용인시 100퍼센트, 수원시 50퍼센트, 고양시 50퍼센트,

평택시 30퍼센트로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 무허가 세대수 쪼개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이 과연 적절한지 다소 약한 건 아닌지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이 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영란의원 발의)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위영란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위영란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화성시 시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우리꽃식물원 입장료의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확대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꽃식물원 입장료의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정부의 다자녀 기준 권고사항 및 출산 장려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영란의원 발의)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7. 위영란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위영란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기준에 있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다자녀 출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두 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을 세 자녀 이상 가정과 동일하게 감면율을 적용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두 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30퍼센트 감면에서 50퍼센트 감면으로 변경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과 동일한 감면율 적용(안 별표 4 제1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2020. 5. 1. 건축물관리법령이 시행되고 건축물관리법령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 관리자가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 빈건축물을 시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보상비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 건축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 안전 제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청렴성 제고를 통한 해체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